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공무

상 비밀 누설)

[청주지방법원 2010. 10. 14. 2010노640]



【전문】

【피고인】

【항 소 인】검사

【검 사】홍성준

【변호인】변호사 천문국(국선)

【원심판결】청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10고정310 판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

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 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차량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되어 있고, 차량의 사용본거지도 나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방세무직 공무원인바, 개인정보처리를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청 세무2과 지방직 7급 공무원으로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9. 10. 5. 12:4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20에 있는 금천구청 세무2과 사무실에서 공소외 2로부터 전화로 부탁을 받고 그곳에 설치된 단말기를 이용하여 공소외 1의 유사휘발유 제조현장 부근에서 잠복근무 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차적조회를 하여 이를 공소외 2에게 알려주었다.

나. 판단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청 차량정보가 개인정보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당한 목적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차량등록부에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가 충북지방경찰청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차량이 경찰청 소속임을 공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충북지방경찰청장이라는 기관장의 소유로 등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차량의 소유관계가 생존하는 특정한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는 볼 수 없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공무상비밀누설'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27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 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